

쌍치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

농어촌정비법의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쌍치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익사업의 개요

- 가. 사업의 명칭: 쌍치지구 배수개선사업
- 나. 사업시행자: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
- 다. 사업의 위치: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, 쌍계리, 운암리, 용전리 일원
- 라. 사업의 목적: 침수방지, 경지이용률 증대, 영농환경개선, 농가소득증대

2. 토지조서 내용

- 가. 토지 및 물건 소재지
- 불 임
- 나.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면(미등기 소유자,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) 동 조서를 열람기간중 열람장소에 비치 열람
- 다. 열람장소: ①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(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13)
② 순창군청 건설과 (순창읍 경천로 33)
- 라. 공고(열람)기간: 공고일로부터 15일이상 (2026.09.17.~2026.10.04)
- 마. 이의신청 방법: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(3층)에 서면으로 제출
- 바. 기타사항: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함
※ 토지소유자(보상 대상토지 면적의 1/2이상과 총수의 과반수의 이상 동의 서류 첨부시) 감정평가 추천 가능

3. 보상시기 및 방법

- 가. 보상시기: 2026년 10월 이후 보상협의
- 나. 보상가격 결정: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,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가액으로 보상금 지급
- 다. 보상금 지급: 보상협의를 의한 보상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
- 라.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우편 통지하고, 주소·거소 불명으로 미 송달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.
- 마. 문 의 처: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어촌사업부 (☎063-650-7051)
- 바. 기타사항: 보상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계획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, 토지의 편입 및 제외 면적은 추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26년 9월 16일

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(직인생략)